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평신도인재양성·기금위원회 인재 양성에 관한 세칙

2012년 12월 10일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승인
2021년 10월 11일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개정
2022년 9월 6일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개정
2023년 9월 5일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의 목적은 평신도 인재 양성을 위한 평신도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사업)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장학 사업
2. 학술 연구비 지원 사업
3. 제1조(목적)에 부합하는 기타 사업

제3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가톨릭 평신도로 한다.

제4조(사업 심의 기구) 제2조의 사업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평신도인재양성·기금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제2장 장학 사업

제5조(장학생의 모집) 장학생은 연 1회 모집하며, 매년 10월 초에 공고한다.

제6조(장학생의 선발 기준) 장학생 선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그 기준의 적용은 장학생 모집 발표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1. 대학 입학 예정자 또는 재학생으로 국내외에서 천주교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는 자
2. 1호와 관련된 석사 또는 박사 학위 과정(석·박사 통합 과정 포함) 또는 등록 예정에 있는 자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3. 1호와 2호의 대상자 중에 다른 기관의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지 않은 자

제7조(선발 방법) 장학생의 선발 방법은 서류 심사 및 면접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전공 과목 및 외국어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신청 서류)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자는 모집 기간 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 신청서(소정 양식)
2.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
3. 대학 입학/재학 증빙 서류
4. 대학원 및 대학 전 학년 성적 증명서(해당자)
5. 지도 교수의 추천서(소정 양식)
6. 학업 계획서(소정 양식)
7. 주임 신부 추천서

제9조(장학금 지급)

- ①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매 학기 등록금의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단 지급액 규모의 한도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 ② 장학금은 두 학기 동안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학업 성적이 뛰어나고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석사 학위 과정의 경우 네 학기, 박사 학위 과정의 경우 여섯 학기까지 계속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장학금의 지급 시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 학기 초로 한다.
- ④ 장학금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지급한다.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다음 학기에도 연속으로 장학금을 수혜받기 위해서는 해당 학기 학점 평균이 B+ 이상인 경우를 원칙으로 하며, 수혜자는 학기 성적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석사 또는 박사 과정(석·박사 통합 과정 포함)의 경우, 과목 수강 대신 논문 연구, 실습, 기타 특별한 수업 운영으로 인하여 성적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적 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학업 수행 과정 및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해당 학기에 수행한 논문 연구 스케마, 작성 논문에 대한 지도 교수 확인서(지도 교수 서명 포함), 실습 내용 및 방법 등의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학위를 취득한 후 주교회의가 요청할 경우 연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제11조(장학금 지급의 중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서류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2. 장학금을 받은 후의 학업 성적이 평균 B+ 미만이 된 경우
3. 학업 성적 우수로 지급받은 교내 장학금 외의 교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4. 학업을 중지하거나 전공 외의 학문으로 변경한 경우
5. 가톨릭 신자로서 품위를 크게 훼손한 경우

제3장 학술 연구비 지원 사업

제12조(지원 대상자 모집) 학술 연구비 지원 대상자는 연 1회 모집하며, 매년 10월 초에 공고한다.

제13조(학술 연구비 지원 대상) 학술 연구비 지원은 천주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주제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접수일 현재 내부 및 외부 연구비를 지원받지 않은 연구 계획서
2. 학술적으로 그 가치와 공헌도가 인정되는 연구 계획서
3. 학위(석사, 박사) 수여 대상이 아닌 연구 계획서

제14조(학술 연구비 지원 신청 자격) 학술 연구비 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에 재직하는 교원
2. 대학 부설 및 각종 연구소에 재직하는 연구직 종사자

제15조(제출 서류) 학술 연구비 지원자로 선발되고자 하는 자는 모집 기간 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술 연구비 신청서(소정 양식)
2. 연구자 이력서
3. 연구 계획서(소정 양식)
4. 연구 수행 계획(소정 양식)
5. 연구 실적 목록

제16조(연구비 지원 과제 선정 절차)

- ① 서류 심사 및 면접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심사 방법과 기준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③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의 심의를 필요로 할 경우 별도의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7조(연구비 지급 방법과 기간)

- ① 연구비 지급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다. 지급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 시기와 지급 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② 연구비의 지급 금액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연구 과제가 선정된 후 연구비의 50%를 지급하고, 최종 연구 결과물을 제출받은 후에 나머지 50%를 지급한다.

④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연구비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지급한다.

제18조(연구자의 의무)

① 연구비 지원 대상자는 선정된 후 6개월이 경과할 때에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를 마친 때에는 최종 결과물을 논문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 지원 대상자는 주교회의가 요청할 경우 최종 결과물을 주교회의가 주최하는 연구 발표회에서 발표하여야 한다.

제19조(연구비 지급 중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한 연구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한다.

1. 연구 주제가 이미 발표된 것임이 밝혀진 경우
2. 주교회의가 주최하는 연구 발표회에서 발표하기에 앞서 다른 곳에서 발표할 경우
3. 중간 보고서가 부실하거나 제출 기한 내 최종 결과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1. (시행일) 본 세칙은 주교회의 상임위원회가 승인한 날로부터 효력을 지닌다.
2. (세칙 변경) 본 세칙을 변경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주교회의 평신도인재양성·기금 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교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